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 예고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정수처분)에 의거 수도요금 체납에 따라 급수시설이 정수 처분된 자에게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체납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재산 압류코자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9. 16.(목) ~ 9. 30.(목), 14일간
2. 공고내용 : 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재산 압류처분 사전 예고
3. 법적근거 : 수도법 제68조(요금 등의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
4. 압류예고 재산표시 : 부산 강서구 괴정동 194-11 (대: 131㎡)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급수전 현황			체납현황		정수처분
고객번호	수용가	주 소	체납기간	금액(원)	
210876-100	신*길	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티로 41번길 31(괴정2동) (괴정2동 194-11)	2021. 1월~ 2021. 7월	1,107,780	2021.5.28.

6. 납부안내

- 상기 급수전 수용가는 공고기간 내 체납된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수도법」 제68조 의거 요금 등의 강제징수와 「지방세징수법」 제33조에 의거 귀하 부동산을 압류 조치함을 알려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 요금부서 (☎ 051-669-5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9월 16일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사하사업소장

